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기상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기상청의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감축하고, 「기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상청, 기재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을 “기상산업·항공기상·융합특화기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응용특화기상서비스”를 “융합특화기상서비스”로 한다.

별표 1의 강원지방기상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31”을 “428”로 하고, 일반직 계 “430”을 “4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18”을 “41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82”를 각각 “67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66”을 “66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생략)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u>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u> (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 <u>기상산업·항공기상·융합특화기상</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응용특화기상서비스</u> 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3. <u>융합특화기상서비스</u>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431</u>	<u>428</u>	-3
·	·	·	
·	·	·	
일반직 계	<u>430</u>	<u>427</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18</u>	<u>415</u>	-3
·	·	·	
·	·	·	

[별표 3]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82</u>	<u>677</u>	-5
일반직 계	<u>682</u>	<u>677</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66</u>	<u>661</u>	-5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3